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구파발교회



2024년 03월 31일 개정(rev. 4)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	3
제1장 총 칙	3
제1조 【목 적】.....	3
제2조 【선거관리기구】.....	3
제3조 【항존직분자의 피선거격】	3
제4조 【투표권자】.....	3
제2장 공동의회.....	4
제5조 【공동의회 소집 및 공고】	4
제6조 【공동의회 개회성수】.....	4
제3장 공동의회 회원명부	4
제7조 【회원명부】.....	4
제8조 【명부열람】.....	4
제10조 【수정 신청】.....	4
제4장 선거방법 및 선출.....	5
제11조 【후보 등록】.....	5
제12조 【투표와 선출】.....	5
제13조 【기표소 설치】.....	5
제14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 】.....	5
제15조 【투표용지 교부】	6
제16조 【선거운동 금지】	6
제17조 【권징】.....	6
제18조 【규정 개정】.....	6
제19조 【위임사항】.....	6
제20조 【시행】.....	6

항존직 선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구파발교회 항존직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기구】

- ① 항존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회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직 또는 사무간사 중에서 선거 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회가 정한다.

제3조 【항존직분자의 피선거격】

- ①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 ② 안수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 ③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라야 한다.
- ④ 장로는 구파발교회 등록된 지 7년을 경과한 자와, 구파발교회 협동장로로 임명 받은 후 구파발교회 내 부서에서 4년 이상 봉사한 자라야 한다. (단 시무기간이 3년 이상 가능해야 한다)
- ⑤ 안수집사, 권사는 구파발교회 등록된 지 5년을 경과한 자와 구파발교회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 임명 받은 후 구파발교회 내 부서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자라야 한다. (단 시무기간이 3년 이상 가능해야 한다)
- ⑥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한다.
- ⑦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구파발교회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교육이수 기준은 당회가 정한다.
- ⑧ 구파발교회 등록 기준일은 공동의회 공고일로 한다.

제4조 【투표권자】

- ① 투표권자(이하 회원)는 구파발교회 교인으로 12개월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 ② 회원이 구파발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당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투표자격을 상실한다.
- ③ 회원의 무효 기간 산정 기준은 구파발교회 등록일로부터 공동의회 공고일까지로 한다.

제2장 공동의회

제5조 【공동의회 소집 및 공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6조 【공동의회 개최성수】

- ① 공동의회는 1부 예배 중에 개최하여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종료한다.
단, 당회는 공동의회 소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공동의회의 개최 성수는 회집 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3장 공동의회 회원명부

제7조 【회원명부】

- ①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교적부에서 교구별, 구역별로 회원명부를 작성한다.
- ② 회원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명부열람】

- ① 공동의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장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명부만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 신청】

- ① 회원은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무자격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확정된 때에는 회원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방법 및 선출

제11조 【후보 등록】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 동안 추천한다.

- ① 당회 추천: 직전 공동의회 시 마지막 공동의회 후보자로서 후보자 본인이 당회 추천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추천한다. (단 동일인의 당회 추천은 3회까지만 하며, 임직일 기준으로 시무기간이 3년 이상 남아야 한다.)
- ② 본인 지원: 본인이 제3조 【항존직분자의 피선거격】을 확인하여 “항존직 후보 지원 신청서”(서식 2)를 작성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제3자 추천: 제3자가 항존직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장로는 25인 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15인 이상 회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항존직 후보 추천서”(서식 3)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인 자격은 제4조 【투표권자】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 한다.
- ④ 위 ①항과 ③항의 추천은 받은 항존직 후보자는 “항존직 후보 지원 신청서”(서식 2)를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투표와 선출】

- ①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 ②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③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 ④ 위 ②항, ③항 안수집사와 권사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되 배수공천, 선거회수 등 세부사항은 당회에서 사전에 결정하여 공동의회 소집 공고 시에 공고한다.
- ⑤ 1차 투표의 경우 후보자 순번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차, 3차 투표의 경우 이전 투표의 순위로 한다.

제13조 【기표소 설치】

투표 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 】

-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에는 투표용지 대신에 투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 ③ ②항의 경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이 없이 온라인 집계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대신한다.

제15조 【투표용지 교부】

- ① 회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회원명부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투표한다.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할 경우 투표용지 대신에 각 개인에 부여된 투표 인증번호를 수령한다.
- ② 회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실에서 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투표용지 또는 투표 인증 번호를 수령할 수 있다.
- ③ 신체의 장애로 투표하기 어려운 회원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1인 이내를 동반하여 투표를 돕게 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운동 금지】

교회의 화평과 연합, 성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 ②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③ 특정인의 당락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하거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④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17조 【권징】

제16조에 규정된 선거운동 금지행위를 한 자는 총회 헌법에 정한 규정에 의거 권징 한다.

제18조 【규정 개정】

-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1/2 이상 또는 제직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개정 발의할 수 있다.
- ② 발의된 규정은 재적 당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되며, 제직회를 거쳐 개정된다.

제19조 【위임사항】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시행】

본 규정은 당회와 제직회 통과 후 곧 바로 시행된다.